

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1년 3월 28일

○ 회부일자 : 2001년 3월 29일

3. 제안이유

여성특별위원회의 남녀차별 법령·법규정비계획에 따라 부녀라는 용어가 결혼한 여자에 국한 또는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부녀라는 용어를 여성으로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의 “부녀”라는 용어를
⇒ “여성”으로 개정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본 조례안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거 설치된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남녀차별 국가법령 및 자치법규 종합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법규를 정비하도록 권고된 것으로서

주요내용으로는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의

“부녀”라는 용어를 ⇒ “여성”으로 개정하려는 것임

⇒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관례적으로 시행되어온 법과 제도에 의한 남녀차별 용어를 개정함으로써 남녀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 임 :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(안)